

제28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2022. 9. 22.)에서 의결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양구군의회 의장 박귀남



양구군의회 규칙 제 27 호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의안의 제출·발의)”를“(의안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을 “5일”로, “게개하는”을 “게재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중 “위원”을 “의원”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7조부터 제5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본 규칙에 따른다.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제1항”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